



양도소득세

# 가산세에 대해서…

글 | 정태화 세무사

## 1.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자.

“가산세”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내야 할 세액(산출세액)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을 말합니다.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### 가. 신고불성실 가산세

① 무신고 가산세(① + ②) :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합니다. 다만,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봅니다.

① 일반무신고 가산세=[산출세액 × (일반무신고 소득금액 / 종합소득금액)-원천징수 된 세액]×20%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=[산출세액 × (부당무신고 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-원천징수 된 세액]×40%

단,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×0.07(부당무신고는 0.14)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.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란 ③ 이증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

④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⑤ 허위증빙 등의 수취(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) ⑥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⑦ 재산을 은의하거나 소득·수익·행위·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⑧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입니다.

2) 과소신고 가산세(① + ②) :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합니다.

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=[산출세액 × (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-원천징수 된 세액]×10%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=[산출세액 × (부당과소신고 소득금액/종합소득금액)-원천징수 된 세액]×40%

3) 초과환급신고 가산세(① + ②) :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,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

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
- ① 일반초과 환급신고 가산세=일반초과환급세액 × 10%
- ② 부당초과 환급신고 가산세=부당초과 환급세액 × 40%

#### 나. 납부(환급)불성실 가산세

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.

- ① 납부불성실 가산세=무납부(과소납부) × 0.03% × 경과일수
- ② 환급불성실 가산세=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× 0.03% × 경과일수 \* 경과일수=납부기한 (환급받은 날)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 일까지의 기간입니다.

#### 다. 보고불성실 가산세

① 지급조서 불성실 가산세(모든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등) :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.

지급조서 불성실 가산세= 미제출 · 불분명한 금액 × 2%

- ② 계산서 보고 불성실 가산세(복식부기의무자)
- ③ 계산서 미교부 · 불명가산세 :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. 계산서 미교부 · 불명가산세= 공급가액 × 1%
- ④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: 매입 ·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합니다.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=공급가액 × 1%. 다만,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50% 경감합니다.

#### 라. 증빙불비가산세

사업자(소규모 사업자 제외)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· 세금계산서 ·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. 증빙불비가산세 = 정규증빙 미 수취금액 × 2%

마.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: 사업자(소규모 사업자 제외)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합니다.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= 미제출(불분명)지급금액 × 1%

#### 바. 무기장 가산세

사업자가(소규모 사업자 제외)가 간편 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 ·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 부과합니다. 무기장 가산세=산출세액 × 무(미달)기장소득금액 / 종합소득금액 × 20%입니다. 다만, 무신고가산세 ·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,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· 과세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. 그밖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,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,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, 현금영수증 미발급기간세, 사업용 계좌 미사용기한세(2008. 1. 1.부터 적용) 등이 있습니다. ♦